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420

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 : 김상욱 • 이준석 • 김예지

서천호 · 김한규 · 정준호

천하람・김 윤・이소영

박주민 • 박지혜 • 성일종

김용민 · 조경태 · 이해민

이종배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3·1절, 제헌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 및 공휴일은 없는 실정임.

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 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 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.

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·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4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광복절"을 "6·10민주항쟁, 광복절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공휴일) 공휴일은 다음 각	제2조(공휴일)		
호와 같다.			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에	1		
따른 국경일 중 3·1절, <u>광복</u>	<u>6 • 10</u>		
<u>절</u> , 개천절 및 한글날	민주항쟁, 광복절		
2. ~ 10. (생 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		